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서정희(주저자)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효상(교신저자)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국문초록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도 변화되었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닌 가라는 근본적인 쟁점과 어떤 기본소득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적절한 경로가 될 것인가라는 정책적 쟁점이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모두 동일한 층위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들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본소득 형태들의 제도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핵심 요건으로서 6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각 요건들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여 각 요건의 판별 기준과 유의미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배당 원칙과 기본소득의 목적이자 효과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근거로 기본소득 구성 요건을 위계화하였다. 셋째, 이러한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 변형태로서의 여러 제도들의 위계를 도출하였다.

핵심어: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 기본소득의 위계, 완전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참여소득

I. 서론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속에서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처럼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정책이 실시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본소득 일반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재원 일반이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기본소득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적절한 전략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온전한 기본소득이 단번에 실현되기 어렵고, 단계별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과도기적/전환적 기본소득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다(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8;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2018]).

이런 변화는 기본소득 자체를 둘러싸고 두 가지 쟁점을 낳았다.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서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닌지가 그것이다. 이는 다양한 정책 및 정책 제안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어디까지를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요건, 즉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그리고 충분성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보편성은 어디까지이며, '무조건성'에서 말하는 조건 없음은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의의 출발점은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가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기본소득의 요건은 다른 소득보장 제도와 구별되는 기본소득의 고유한 특징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왜 이런 방식으로 분배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에게 주어져 있거나 함께 만든 자연적, 사회적 공유부야말로 이런 기본소득의 분배 방식이 왜 정당하고 가능한지를 설명한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거나 함께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공유부의 존재 범위에 속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그 단위는 개인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공화주의적 자유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유주의보다 훨씬 오래된 이념인 공화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 관계로 보는 논의를 지양하고, 개인의 자유와 정치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관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공유부에 근거한 기본소득은 이런 현대적 공화주의와 공명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무엇이 기본소득인가라는 논의는

현대적 공화주의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적절한 경로 혹은 전략이 무엇인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단계를 설정한 경우 어떤 기본소득 혹은 유사 기본소득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데 적절한가라는 문제이다. 이때 제안되는 것은 충분성을 타협한 부분 기본소득, 보편성과 타협하여 일부 인구 집단에서 시작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예를 들어 청년 기본소득), 무조건성을 타협하는 참여소득 등이 있다. 이러한 변형된 기본소득 중 어느 형태가 더 적절한 단계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과도기적 기본소득으로 어떤 정책을 채택해야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하나는 기본소득의 내재적 속성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여러 속성이 동일한 층위에 있는 게 아니라 위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과도기적 기본소득 사이에서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분 기본소득(충분성 타협), 범주형 기본소득(보편성 타협), 참여소득(무조건성 타협)은 기본소득의 내재적 속성의 위계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측면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어떤 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 도입이 더 수월한가이며, 다른 하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성이 있는가이다. 도입의 수월성은 그 제도의 지지 세력과 주체가 형성될 수 있는지, 다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이 있는지, 일반 대중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독립행위자(정치인, 정책결정자)의 전략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입의 수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 유무가 아니라 값싼 지지(cheap support)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성은 과도기적 기본소득 혹은 경험적 정책 대안이 최종 종착지로서의 제도가 아니라 완전 기본소득의 경로 속에 위치하는 것이라면, 각 제도들이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기본소득의 정당성, 필요성에 관해서는 논의들이 진척되어 왔지만, 다양한 변주로 제시된 기본소득의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형태들에 대한 위계 판단이나 그 근거를 논증하는 연구는 없다. 그 이유는 국외에서는 기본소득이 주로 실험 방식으로 현실화되거나, 과도기적 기본소득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 모델로서의 부분 기본소득 제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와 정치적, 사회운동적 상황

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외국의 논의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척되어 왔지만 이것이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의 위계 및 제도적 위계에 대한 논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전국적 기본소득 제도로서의 부분 기본소득이 정치적, 현실적 의제가 된 지금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기본소득의 정의를 구성하는 특성과 추가적인 핵심 특성인 충분성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을 6가지로 제시하고, 각 요건들을 논자들마다 어떻게 정의하고 판별하는가에 대한 쟁점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 요건의 판별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각 요건들이 기본소득을 구성함에 있어 어떤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한다.

III장에서는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위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한다.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 공유부 배당 원칙과 공화주의적 자유로부터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들의 위계를 도출한다. 이러한 위계에 따를 때 기본소득의 현실태로 제기되는 변형태들이 어떻게 위계화되는지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우선순위에 관하여 논의한다.

IV장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과 의미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정관 제2조에서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면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다.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기본소득의 요건은 충분성이다(김교성 등, 2018; Casassas, 2018[2020]; Standing, 2017[2018]; Torry, 2018[2020a]). 각 요건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요건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들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각 요건들의 정의 및 판별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하고, 어떤 판별지표가 타당한지 분석한다. 또한 해당 요건이 갖는 유의미성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1. 보편성

1) 정의 및 판별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보편성은 이상적으로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사회, 지역, 국가 등에 '상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국가의 구성원, 즉 시민에 '합법적 거주자'를 더한 것이다(Standing, 2017[2018]).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 요건의 판별 지표는 특정 정치공동체 내의 모두에게 제공되는가, 일부(특정 집단)에게 제공되는가이다. 대다수의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보편성을 이 기준에 의거하여 해석한다(예를 들어 금민, 2020a; 2020b; 김교성 등, 2018; 서정희, 노호창, 2020; Casassas, 2018[2020]; Standing, 2017[2018]; Van Parijs, 2006[2010]).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판별 기준은 기존 사회정책에서의 보편성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이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보편성 기준과 관련한 이론적 쟁점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자산조사로 빈곤층에게로 한정하는 경우를 보편성 미충족이라고 볼 것인지, 무조건성 미충족이라고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이나 노인처럼 일부 연령 집단에게 한정하는 경우 기존 사회정책에서처럼 보편성으로 볼 것인지, 일부 집단에게 한정하였으므로 보편성 미충족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쟁점(빈곤층 한정)에 대해서 대다수의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무조건성 미충족이라고 보지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와 일부 기본소득론자들은 보편성 미충족이라고 상정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Van Parijs와 Vanderborght(2017[2018])와 Alston(2017) 등이 보편성 미충족으로 주장한다. 이 쟁점은 무조건성에서 자세히 다룬다.

후자의 쟁점(보편수당과 같은 특정 연령 모두)은 사회정책의 보편성 개념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Torry(2018[2020a])는 '보편적'이라 함은 '모든 사람에게'를 의미하고, 이는 대개 '특정 지역 내에서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사회정책 문헌에서는 아동수당과 같은 무조건적 급여가 '보편적 급여'로 불림으로써 보편적 급여는 때로 무조건적 급여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Torry(2018[2020a])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연령 등의 귀속적 욕구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기준이고, 빈곤 등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준인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준을 근거로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는 무조건성 위반으로,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처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기준을 근거로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는 사회정책의 전통에 따라 보편성 충족으로 설명한다.

기본소득의 보편성 개념은 기존의 사회정책의 보편성 개념과 충돌한다. 기존의 사회정책의 보편성 개념은 선별성의 대립항으로서 위치했고, 이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볼 때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하나의 축에서 설명된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개념도 변화한다. 그동안의 사회정책에서 보편과 선별은 ‘조건’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왔다.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욕구나 필요, 기여 등 조건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었다. 기존의 개념으로 볼 때 보편주의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은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보편수당(아동수당, 노인수당, 장애수당)이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이 틀에서 보면 모두에게 귀속적 욕구조차 고려하지 않은 기본소득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또한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전략으로서 범주형 기본소득이 이 틀에서는 보편주의를 가장 잘 실현한 단계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조건 유무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가르는 판별 지표가 아니라 모든 거주민과 특정 집단을 가르는 판별 기준으로서의 보편성 기준이 요구된다. 기존의 틀에서 보편주의를 가장 잘 충족하고 있는 지표로서의 귀속적 욕구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이 요구된다.



출처: Gilbert and Terrell, 2013(2020).

[그림 1] 사회정책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스펙트럼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본소득에서의 보편성은 사회정책의 보편성을 승계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특성으로서 ‘귀속적 속성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Torry(2018[2020a])의 개념을 차용하면, 증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되지 않는 귀속적 속성을 근거로 대상을 제한하는가, 모두에게 적용하는가의 구분으로 판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완전 기본소득은 보편성 지표를 충족하지만 아동, 청년 등의 특정 인

구 집단에게 한정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보편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유의미성

보편성의 판별 지표를 ‘모두에게’ 주어지는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는가로 구성된다고 할 때,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4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근대 사회는 인간의 권리를 자연권으로 보는 관점에 기초하여 성립했고 또 이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힘을 집행할 수 있는 단위는 국민 국가였고, 따라서 인간의 권리는 국민국가가 보장하는 시민권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낳았다. 하나는 언제나 국가 외부에, 더 정확하게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인간의 권리가 전혀 보장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권에 의해 성립하고 시민권을 보장하는 국민국가 체제 자체가 고정되거나 안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1989-91년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에 그 이전까지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었던 국민국가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성립, 심화, 확대 속에서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차원의 구성원 자격(membership)과 권리가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기존의 시민권을 넘어서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도덕적, 정치적 근거를 제공한다(Anderson, 2009[2018]; Arendt, 1951[2006]: 532-533; Van Gunsteren, 1998[2020]: 14-19). 특정 정치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형식적으로 시민권으로 보장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시 말해 시민권의 토대인 인간의 권리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 동시에 지구화, 이민과 난민, 에스니시티의 발흥, 시민이나 사실상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데니즌(Denizen)의 지위로 떨어진 사람들의 확대(Standing, 2011[2014]) 등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가 유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권리 및 공유자의 권리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며, 이는 좀 더 포용적인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유부로부터 기원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 자산에 대해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노호창, 2020). 노호창(2020: 155)은 “기본소득의 본질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에서 비롯되는 지

분을 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는 동등한 구성원의 자격이 있다면 모든 구성원 개인은 무조건적으로 차등없이 지분권의 실현 형태로 동일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받을 것을 권리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지분권적 권리는 "선거권을 통해서 정치적 영역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이 1인 1표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공동체 구성원 자격에서 나오는 지분권의 동일한 크기만큼의 정치적 실현을 경험"하고 있다고 논증한다. 이로부터 기본소득은 "공동체 구성원 자격에 기초한 지분권의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의 실현"으로서,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 자격에 기초한 지분권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공동체 구성원 자격에 기초한 기여분의 배분권)을 규정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결코 낮은 개념은 아닌 것"이다(노호창, 2020: 155). 공동체 구성원 자격에 기초한 지분권은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구성한다. 공유부의 속성에서 기인한 보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한다.

셋째,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기본소득의 실현 이후 이를 유지하게 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복지와 수당이 보편성을 가지게 되면 후한 수준으로 지급되어도 이를 삭감하기 쉽지 않고, 삭감해도 곧 본래의 액수를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2018]: 498). 이는 알래스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의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배당하는 알래스카 영구배당기금의 배당 방식을 다시 이전처럼 주정부 예산으로 환원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1999년 국민투표를 통해 이 안건은 84%의 반대로 기각되었다. 알래스카 주에서 영구배당기금의 보편 배당은 그 어떤 정치인도 건드릴 수 없는 제도가 되었다(Widerquist and Sheahen, 2012).

2. 무조건성

1) 정의 및 판별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 연구 대부분은 무조건성 판별 지표로서 근로조건과 자산조건 없음을 제시한다(김교성 등, 2018; Standing, 2017[2018]; Van Parijs, 2006[2010]: 37 등).

무조건성 판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득 조건, 지출 조건, 행위 조건으로 분류한다. Standing(2017[2018]: 22-23)은 무조건성을 3가지 하위 지표로 구성하는데, 첫째, 소득 조건(자산조사)이 없을 것, 둘째, 지출 조건이 없을 것, 셋째, 행위 조건이

없을 것으로 제시한다. 자산 조사가 없다는 것은 현재의 소득 상황이나 재산 정도가 기준선 이하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거나 이런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출 조건이 없다는 것은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지에 관해 소비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출 조건 없음은 한정된 용처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나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현금 급여와 기본소득을 가른다. 행위 조건이 없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이나 구직활동과 같은 노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조건성의 판별 지표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혼선의 시작은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가 기본소득의 특징을 설명하는 웹페이지에서 보편성을 ‘자산조사 없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하여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오해의 여지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서정희, 노호창, 2020). Van Parijs와 Vanderborght(2017[2018])가 자산조사를 무조건성의 판단 지표가 아니라 보편성의 지표로 설명하면서 이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판 파레이스(Van Parijs)는 1995년 저서와 2006년 저서에서는 자산조사 없음을 무조건성 지표로 설명하고 있는데, 2017년에 입장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에 서술된 판 파레이스의 저작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에서는 무조건성을 4가지 하위 요건 충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무조건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4가지는 ① 일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②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③ 누구와 함께 살고, ④ 그 나라의 어떤 지역에 살든지,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 각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Van Parijs, 1995[2016]: 78-80). 또한 2006년 Van Parijs(2006[2010]: 37-38)에서는 두 가지 무조건성(자산조사와 노동능력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결합시킨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이며, 기본소득이 갖는 결정적인 강점은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Torry(2018[2020a])의 경우 무조건성의 판단 지표로서 조건을 두 가지로 세분화한다. 하나는 소득과 고용 지위와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급여 체계에서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조사가 요구되는 조건성이고, 다른 하나는 연령과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급여 체계에서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조사가 요구되지 않는 조건성으로 구분하여 2가지의 조건성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Torry(2018[2020a])의 무조건성에는 인구학적 범주(연령 등)로 제한하는가 여부도 포함되어, 자산조사, 고용 지위 조사, 연령·성별 조건 등이 포함된다.

Fitzpatrick(1999)의 경우 무조건성을 ‘고용 지위, 고용기록,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와 관계없이, 혼인 지위와 관계없이’로 제시한다.

〈표 1〉 무조건성 판별 지표 구성

출처	무조건성 판별 지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근로조사 없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자산조사 없음, 근로조사 없음
Van Parijs, 1995(2016)	자산조사 없음, 근로조사 없음, 가족형태 조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Van Parijs, 2006(2010)	자산조사 없음, 근로조사 없음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2018)	근로조사 없음
Torry, 2018(2020a)	조사가 수반되는 조건성(자산조사, 근로조사 등) 없음 조사가 수반되지 않는 조건성(성별, 연령 등) 없음
Standing, 2017(2018)	소득조건(자산조사) 없음, 지출 조건 없음, 행위 조건 없음
Fitzpatrick, 1999	고용 지위, 고용기록,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에 관계없이, 혼인 지위에 관계없이

무조건성의 판별 지표로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조건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다. 현재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지, 고용되어 일한 기간이 얼마인지,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시도를 하고 있는지 등 고용과 관련하여 조사와 증명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일치한다. 그러나 그 외의 기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이때 무조건성의 판단 지표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자산조사 없음’이 보편성 지표인가 무조건성 지표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의 종류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첫째, 자산조사 없음은 무조건성 지표로 보는 게 타당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귀속적 욕구와 같이 그 속성의 증명을 위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내재적 속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는가를 보편성 판별 지표로 할 경우, 자산조사의 경우 빈곤층인가 아닌가는 개인의 귀속적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조사라는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자산조사를 포함하여 모든 추가적인 조사는 조건성에 해당한다.

둘째, ‘조건’의 종류는 크게 자산조사와 근로조사가 핵심적이지만 추가적인 조건이 제시된다면 이 역시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면, 모든 조건(자산조사, 소비조건, 행위조건, 근로조건 등)은 무조건성의 판별 요건으로 간주해야 한다.

2) 유의미성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자 기본소득을 여타의 제도들과 구분짓는 표지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결정적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무조건적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2018]: 30).

무조건성이 중요한 이유는 4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공화주의적 자유 실현이라는 측면, 공유부 배당이라는 측면, 제도적 측면,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무조건성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첫째, 무조건성은 공화주의적 자유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공화주의적 자유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하는 주체의 자유를 말한다. 선택하는 주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당한 간섭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인 공화주의 정치철학자인 필립 페티(Philip Pettit)은 이를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 freedom)라 말한다(Pettit, 1997[2012]).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야말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에는 생존을 위한 경제적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Raventós, 2007[2016]: 99-100).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경제적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적이어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동시장에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지 자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조건이 무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Casassas, 2018[2020]: 149-152).

둘째, 무조건성은 공유부 배당이라는 기본소득의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III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자연적 공유부는 모든 인간에게 생래적으로 주어진 것이다(금민, 2020a: 76). 사회적 공유부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에게 몫이 있다. 하나는 사회적 공유부는 언제나 자연적 공유부와 불가분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공유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여기에는 앞선 세대의 유산, 특히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유부에는 직접적 기여 여부로 따질 수 없는 모두의 몫이 들어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복지정책의 확대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다. 코르피와 필페는 빈곤층을 선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선별적인 정책을 시행한 국가보다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을 밝혀내고, 이를 두 가지 요인과 경로로 설명한다(Korpi and Palme, 1998). 선별적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재분배 예산이 적고, 보편적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재분배 예산의 규모가 크다. 그리고 사회보장 예산 규모가 클수록 빈곤 감소 효과가 커지는 재분배의 역설이 나타난다. 이러한 재분배의 역설을 설명하는 요인은 증세를 위한 정치적 동맹의 가능성이다. 선별적이지 않은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증세를 위한 정치적 동맹이 가능했고, 선별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국가에서는 선별적 정책에 대한 정치적 동맹이나 연합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Korpi and Palme, 1998).

넷째, 제도적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경합하는 다른 정책 대안에 비해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구체적인 제도들과 비교하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사후적 분배로서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비해 사전적 분배로서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특성이자(Van Parijs, 1995[2016]: 81-83). 조세 목적의 소득 평가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시간 지체를 고려할 때, 부의 소득세 제도는 수급 자격의 적격성과 지급액을 평가하기 위한 세무행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실질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 지급 방식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비로소 기본소득과 경쟁할 수 있다. 또한 부의 소득세의 예산-집합은 일정액의 현금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이전소득의 지급여부와 급여액이 달라지는 교정적 이전(corrective transfer)이라는 불확실성을 띤다. 이는 '실업 함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빈곤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구직 활동이나 취업을 단념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일한다고 해도 실업 상태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은 혹은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라기보다, 일자리를 얻은 후에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안전하고 정기적인 급여의 포기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유동성 갭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수당이란 곧 고용주들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직접적인 경제적 의미에서 보면 생산성이 없는 일자리에 대한 잠재적인 보조금의 성격을 떨 수밖에 없지만,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형편없는 혹은 저질의 일자리를 보조하지 않게 된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2018]: 56).

다섯째, 조건성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설계될 수 있는데, 사회정책에서 조건성의 약화는 그 제도의 정치적 지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Calnitsky(2016)는 캐나다의 1960년대와 1970년대 민컴 실험에서 조건성 약화가 복지의 관점을 바꾸었다고 설명한다.¹⁾ 3년 간의(1975-1977년) 연간보장소득 실험이었던 민컴(Manitoba Basic Annual Income Experiment, Mincome) 실험 중 포화 지역(saturation site) 실험이었던 매니토바의 도핀(Dauphin, Manitoba) 지역 실험은 부의 소득세 방식의 실험으로 소득조사가 존재하는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성의 일부 제거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역동을 보여준다. 영미권 국가의 자산조사 제도가 갖는 낙인으로 인해 복지가 곧 낙인이 강한 공공부조이고, 복지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만연한 풍토에서 최대한 조건성이 제거된 부의 소득세 방식의 제도 실험이 참여자로 하여금 “삶에서 언제나 최저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정성을 부여하고, 참여자들이 이러한 급여가 삶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복지보다 좋다’는 평가를 하게 한다.

3. 개별성

1) 정의 및 판별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여의 표준 단위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정책에서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혹은 가구 단위를 통해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인지에 관한 선택에 직면한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4: 267).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두 가지로 적용된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2018]: 41). 첫째, 기본소득 급여가 각 개인에게 지급된다. 둘째, 지급되는 액수가 개인의 가정경제 상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개별성의 판별은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가, 세대주에게 가구 전체의 급여가 지급되는가이고, 이러한 판별은 단순하고 이견이 없다.

1) Calnitsky(2016)는 Skocpol(1991)의 연구를 인용하여 ‘보편주의 내의 선별주의’(targeting within universalism)를 주장하면서, 조건성이 덜 붙는 방식의 민컴 실험을 보편주의로 설명한다. 1970년대 북미 국가의 자격 있는 빈자와 자격 없는 빈자의 구분이 강하고, 선별주의가 강한 국가라는 맥락을 고려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소득 기준 하나만 주어지고 다른 행위 조건 등의 일체의 조건이 없었던 상황, 일체의 재량적 선별이 존재하지 않은 조건 등을 50년 전의 맥락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맥락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조건성 완화로 본다.

2) 유의미성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4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기본소득이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동등자라는 원칙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삶의 현실적 형태인 가구 혹은 가족과 관련해서 특정 유형을 선호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Standing, 2017[2018]: 21). 이는 기본소득이 근대적 삶의 지향인 개인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율성은 외적 강제 혹은 주어진 것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동기에 의해 형성된 지향이며, 제임스 해링턴이 말하는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Harrington, 1656[1992]). 물론 이때 개인의 자율성의 추구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 말하는 원자화된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개인들의 자율성 추구이다. 공유지로의 존재론적 전환(OntoShift)의 관점에서는 포개진 나(Nested-I)이며, 민주적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받지 않게 위해 분투하는 개인들이다(Bollier and Helfrich, 2019; Casassas, 2018[2020]).

둘째, 가구 단위인가 개인 단위인가 하는 기준은 급여 지급 단위의 차이인 듯 보이지만, 권리성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은 권리 주체에 대한 인정의 의미를 내포한다. 가구 단위라 할 때, 가구의 의미는 같이 거주하는 단위로서의 가구(households), 공통의 소비를 하는 단위로서의 소비 공동체(spending units), 혈연관계 혹은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가족(family units), 지속적인 의존 관계를 의미하는 내부 가족(inner family)이 있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4: 267). 이러한 현금급여에서 가구의 설정은 국가마다 급여마다 다양하다. 어떤 단위의 가구로 설정하건 가구 단위 급여를 하는 근거는 사람들의 삶에서 소비가 가구 구성원 간에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상정하기 때문이다.

소비 단위로서 가구를 상정하게 되면, 가구 규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4인 가구의 급여는 1인 가구의 4배가 아니라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그만큼 감액된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여러 급여들 중 연금, 실업급여, 상병수당, 산재보상보험의 장애급여,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개인 단위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공부조에 대해서만 가구 단위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험료라는 개인 기여가 있는 사회보험 제도에서는 개인 단위로 보상하고, 개인의 기여가 없는 공공부조 제도에서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아동수당, 장애수당은 개인 단위로 지급

하면서 왜 공공부조는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아동수당 등은 아동수가 몇 명이나에 따라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급여 감액을 하지 않는다. 복지국가의 변화와 발전을 근거로 추정하면, 결국 이러한 논리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국가의 대전제하에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격 있는' 구성원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람은 '자격 없는' 구성원으로 파악하는 빈곤법 시절의 논리의 존속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근대 국가에서 권리란 가구 단위로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가구 단위 급여는 개인의 권리성을 약화시킨다(노호창, 2020; 서정희, 노호창, 2020).

셋째, 특정 집단 혹은 관계 내에서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부당한 권력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된다. 근대 사회는 개인을 법적 주체로 보고 있음에도 재생산 단위로서의 가족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때 가족 내의 주요 관계인 남녀 관계는 한편으로 여성의 돌봄노동을 자본주의가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 남성 노동자(생계부양자)에 의한 여성의 가부장적 지배와 통제로 인해 부당한 개입과 간섭의 장이 되었다(Dalla Costa, 1983[2017]). 이런 가족 관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는 여성이 힘을 가지는 것이다(empowerment). 이때 힘은 여성이 이런 가족 관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실제로 탈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탈출할 현실적 가능성은 기존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탈출함으로써 기존의 권력 관계를 해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여성 해방의 도구가 된다(Bidadanure, 2019: 484).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구 단위의 급여는 일괄 지급된 총액을 가구 내부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후속 절차를 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구의장과 여타 가구 구성원 간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혼인 및 가족제도가 기초를 두어야 하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서정희, 노호창, 2020).

넷째, 개별성 원칙은 가구 구성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공동생활을 장려하고, 가족해체 함정을 없앤다(Van Parijs, 2006[2010]: 29). 가구 단위 급여의 대표적인 정책인 공공부조는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 단위 급여에 비해 총 급여액이 적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종종 사람들은 가구 분리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실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정부 당국은 이러한 가구 분리가

실제 가구 분리인지, 사람들이 허위주소를 만든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하고, 이는 수급자의 실생활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Van Parijs, 2006[2010]: 49). 개별성 원칙의 실현은 이러한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가구 구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하는 정책적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2018]: 43~44). 하나는 현실적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결혼 관계가 예전에 비해 오래 가지도 않으며, 또 법적으로 혼인이 끝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사실상 헤어진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고,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침범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벨기에 연방 정부는 혼자 사는 척하면서 사회 수당을 요구하는 이들을 잡아내기 위해 가스요금과 수도요금을 감시하기로 결정했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2018]: 76). 다른 하나는 가구 구성에 따라 차별을 두게 되면 사람들을 따로 살도록 장려하는 결과를 낳는다. 좀 더 철저하게 개인에게 적용되는 수당 쪽이 오히려 더 공동체 친화적인 제도이고, 가구를 기본 단위로 삼는 제도는 고독의 악순환 함정(lonliness trap)을 발생시킨다.

4. 정기성

1) 정의 및 판별

기본소득의 정기성은 1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정기성의 의미는 기본소득 급여의 간격, 빈도 또는 기간과 관련이 있다(De Wispelaere, 2015: 55). 정기성은 두 가지 속성으로 세분된다(서정희, 노호창, 2020). 하나는 기본소득 급여의 간격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급여의 빈도 또는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일시금이나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tanding, 2017[2018]: 22; Torry, (2018[2020a]). 이런 의미에서 정기성의 두 번째 특성은 지속성을 의미한다(서정희, 노호창, 2020).

정기성의 두 가지 측면과 관련하여 Murray와 Pateman(2012)은 기본소득의 핵심 요소로 ① 성인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② 평생 동안, ③ 무조건적 급여를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소득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무조건성 이외에 정기성과 평생 지급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주장들과 차이가 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정기성이 내포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정기성 요건에 대한 논쟁은 주로 일시금이나 아니냐로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논쟁에서 일회성이나 지속적이냐에 대한 논의가 정기성 요건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기성의 판별은 정기적 간격과 지속성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유의미성

기본소득의 정기성 요건이 갖는 유의미성은 정기성이 삶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소득보장 급여에서 정기성은 노동의 대가로서의 급여를 받는 간격, 방세·전기세·수도세·가스비·통신비 등의 이용료의 지불 간격, 카드 결제, 교육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주기 등 생계를 유지하는 시간 단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서정희, 노호창, 2020). 소득보장 급여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유지하며 지급된다는 정기성은 생계를 꾸리고 계획하고 유지하는 생활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특성이다(Standing, 2017[2018]: 23). 현대인의 삶은 대개의 지역에서 월 단위로 돌아간다. 경제적 삶이 월 단위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는 훨씬 더 심원한 의미가 있다. 정기성이란 경제주체들에게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이며,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것은 삶의 자율적 구성의 토대가 된다. 공유부 배당이라는 근본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제도적으로 갈라지는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특성 중 정기성에서 분기한다(서정희, 2021). 기초자산은 거시 자유 실현을 위해 일시금 목돈으로 지급되고, 기본소득은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생 지급된다. 기본소득의 정기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일상의 유지 및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서정희, 2021). 일시금인가 정기적 지급인가라는 특성은 규범적 측면에서 기회의 평등인가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적 보장에 관한 것이고, 이는 둘 중 하나를 고르려면 망설임 없이 기본소득을 선택해야 한다(Bonciu, 2020: 30-31). 그 이유는 주기적 급여는 그들의 삶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평생에 걸친 경제적 보장을 보장하는 안전망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Bidadanure, 2019: 485).

5. 현금성

1) 정의 및 판별

기본소득의 현금성은 지급을 받는 대상자 스스로 소비와 투자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됨을 의미한다(서정희, 노호창, 2020).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는 크게 현물급여(재화와 서비스)와 현금급여로 대별된다. 현물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 하에서 생계보호의 급여가 현금이 아니라 연탄이나 쌀과 같은 재화로 지급되거나, 의료서비스 혹은 교육서비스와 같이 제공되는 형태가 서비스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보장 제도가 현금급여로만 제공되거나 현물급여로만 제공될 수는 없다. 교육이나 의료, 고용보장의 주요 수단은 현금급여보다는 현물급여(서비스)가 공공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 그러나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는 소비의 편의와 수급권자의 개별적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현금급여가 더 효과적이다(서정희, 2017).

국외에서는 현금성과 관련된 논쟁은 거의 없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이것이 현금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화폐를 바우처라는 용어로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바우처가 아니다. 바우처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지닌 각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현금과 현물의 중간자적 형태로서 용처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 급여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바우처는 식품 바우처(food stamp), 주택 바우처, 교육 바우처, 사회서비스 바우처이다(Gilbert and Terrell, 2013[2020]). 이러한 바우처는 식품 바우처는 식료품 구입 또는 식당에서의 식사에만 사용할 수 있고, 주택 바우처는 주거비에만, 교육 바우처는 교육기관에서만,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반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화폐’이다. 지역화폐의 경우 그 화폐가 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단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업체로 결제 업체가 제한된다는 점(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온전한 현금성 원칙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는 현물급여도 아니고, 선택의 범위가 한정된 바우처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경우 현금성 원칙을 다소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성 원칙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유의미성

기본소득의 현금성이 갖는 유의미성은 소득보장 급여의 현금성이 갖는 일반적인 장점을 지닌다. 복지경제학의 고전적 이론에서 현금 급여의 장점으로 수급자의 최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점, 소비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소비자 주권을 실현한다는 점이다(Gilbert and Terrell, 2013[2020]: 234-239). 현금성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빈곤층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로 전환시킨다(Bidadanure, 2019: 484). Van Parijs와 Vanderborght(2017[2018]: 39-40)는 현금성의 장점을 4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 급여 지급의 수월성, 둘째, 후견주의 완화,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현물 급여 시 생성될 수 있는 2차 시장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금 지급이 '관계 경제'의 호혜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는 것이다(Ferguson, 2015[2017]: 241-245). 소비는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지출로 치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현대의 삶에서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어서 그 어떤 사회적 행위보다 앞서 존재해야 한다(Ferguson, 2015[2017]: 243).

6. 충분성

1) 정의 및 판별

기본소득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에서 충분성 그리고 충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선은 기본소득 진영에서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모두 기본소득의 정의에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Torry(2019)이다. 그는 기본소득의 정의에 '생계 수준'(subsistence level)을 포함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생계 수준'은 규정하기가 어렵기로 악명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어떤 나라가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충분한 금액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실천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고려는 마찬가지로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충분성 혹은 기준선을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뺀 세 번째 이유는 사회서비스와의 관계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이유가 기존의 모든 사회서비스를 폐지하고 상품화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실제

로 우파 가운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인다(Murray, 2016). 이런 논쟁 상황에서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정의에 넣을 경우 기본소득 자체로 경제적 보장을 하고, 다른 사회서비스를 없앨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때, 기본소득의 정의에 충분성 혹은 기준선을 포함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일이라는 주장이 있다.²⁾ 하지만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 배당(social dividend)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G. D. H. 콜(G. D. H. Cole)이나 제임스 미드(James Meade)처럼 기준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조앤 로빈슨(Joan Robinson)처럼 없는 경우도 있다(Cole, 1935; Meads, 1948; 1972; Robinson, 1969).

이러한 논거들은 충분성을 규정하거나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2016년 총회에서 충분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 끝에 충분성은 정의요건에서 제외하고, 기본소득의 지향으로서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2) 유의미성

기본소득의 충분성을 명확하게 기준을 명시하고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1986년에 기본소득유럽 네트워크로 출발하던 시기에 기본소득의 주요 논자들은 기준선 혹은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요건에 포함시켰다. BIEN 창립 회원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빌 조던은 1984년에 만들어진 영국의 기본소득연구그룹(BIRG)이 기본소득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적절성(adequacy)이라고 말한다. 이때 적절성은 빈곤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보장된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Jordan, 1988).

마찬가지로 창립회원이자 기본소득 진영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자 가운데 하나인 필리 판 파레이스도 당시에는 기본소득을 '보장된 최소 소득'으로 정의했다. 또 다른 창립회원이자 『프레카리아트』라는 저서로 유명한 가이 스탠딩(Guy Standing)도 '기본적 필요'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적당한 금액의 돈'이라는 요건을 기본소득에 포함시킨다(Standing, 2011[2014]; 2017[2018]).

일부 기본소득 조직이나 개인들은 현재에도 높은 수준의 충분성을 기본소득의 정의에 포함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UBIE)는 “주어진 금액이 제대로 된 생활수준을

2)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차 쟁점 토론회: 기본소득의 정의(https://basicincomekorea.org/discussion-topic-1_definition-of-basic-income_paper-revised_by_min-geum/).

위한³⁾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아일랜드 네트워크도 기본소득이 “추가적인 소득 없이도 검소하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기에 충분한”⁴⁾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기본소득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20세기 초반의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김교성 외, 2018; Bidadanure 2019; Russell, 1935[2012]). 또한 기본소득을 공화주의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옹호하는 논자들과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에서 기본소득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논자들은 기본소득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거나, 노동시장에서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Casassas, 2018[2020]; Wright, 2019).

기본소득의 정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건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분명 기존 복지국가의 현금 급여 및 유사 현금 급여와 기본소득을 구별하는 주요한 판별 지표이다. 특히 무조건성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이 공유부에 있기 때문에 따라나오는 원칙이자 공화주의적 자유를 지향할 때 요구되는 물질적 자원의 무조건적 사전 분배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원칙이다(금민, 2020a; Casassas, 2018[2020]).

하지만 기본소득 정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건이 의미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성 혹은 기준선이 기본소득의 주요 구성 요건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섯 가지 원칙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도 너무 적은 액수의 금액이 지급될 경우 이는 ‘기본’ 소득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의미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충분성 혹은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다. 앞서 보았듯이 보편성이나 무조건성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 함의와 범위를 규정하려는 이론적, 실천적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또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충분성 혹은 기준선의 문제도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에서 질적인 지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다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충분성 혹은 기준선을 기본소득의 정의에 포함시킨 후에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3) <https://www.ubie.org/who-we-are/>.

4) <https://basicincome.ie/>.

III.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와 제도적 위계

1.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 위계의 근거

기본소득을 이루는 구성 요건이 기본소득의 고유한 (재)분배 방식을 보여주긴 하지만, 왜 이런 방식으로 분배해야 하는지 자체를 설명하진 않는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분배 방식의 근거인 공유부 배당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을 이룬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 사이의 위계 설정이 개념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서 실천적, 제도적 위계 설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목적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를 공화주의적 자유로 논증한다.

1)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6가지 구성 요건은 기본소득의 특성을 나타내긴 하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칙 그리고 목표와 효과를 직접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진 효율적인 정책 이전에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할 때(Standing, 2019[2021]: 414),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문제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정관 제2조)이라고 정의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나 다른 국가별, 지역별 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조차 기본소득의 정의에 공유부가 들어간 것은 2019년 1월에 정관을 개정하면서이다. 이런 점에서 공유부는 현대의 기본소득 운동에 새로운(novel)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 볼 것처럼 공유부는 기본소득 논의의 출발부터 중요한 논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공유부 논의는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과 소유에 기초한 분배를 정의로운 방식이라고 보는 근대 사회에서 공유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모두의 몫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낯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노동가치설을 핵심으로 하는 고전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수행했던 맑스(Marx)가 말했듯이

“노동은 생산된 사용가치, 곧 소재적 부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윌리엄 페터가 말했듯이 노동은 부의 아버지이고, 대지는 부의 어머니”이다(Marx, 1867[2008]: 58).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의 원형적 형태를 제시한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이중적 소유권이라는 지적 혁신을 통해 사적 소유에서 자연적 부가 차지하는 부분을 드러내었다. 페인은 사적 소유 이전의 원천적 공유를 가정하고 노동 투입과 개량을 통해 사적 소유가 성립한다는 로크를 따라 노동 투입에 따른 개량이 사적 소유를 성립시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적 소유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력에 개량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개량된 부분을 인공적 소유로, 개량 이전에 있던 자연 상태, 즉 원천적 공유를 자연적 소유로 구분하고 사적 소유의 성립 이후에도 자연적 소유는 공유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동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이 나온다(안효상, 2017: 221-223; Paine, 1796[2017]).

페인은 자연적 공유부만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개인 재산은 사회의 효과이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토지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도움 없이 개인이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Paine, 1796[2017]: 70) 따라서 인공적 소유조차 전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이렇게 개인의 성취와 소득에 인공적 공유부에 속하는 게 있다는 관점은 20세기에도 무수히 등장했으며, 기본소득 및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배당(Standing, 2017[2018])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길드사회주의자로 분류되는 G. D. H. 콜(G. D. H. Cole), 사회신용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제시한 클리포드 H. 더글러스(Clifford H. Douglas), 시장 사회주의자로 분류되는 제임스 미드(James Meade) 그리고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산은 사회적 생산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식 등 전송된 유산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말한다(Simon, 2000).

이런 공유부는 공적 소유도 사적 소유도 아닌 제3의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최근 부상한 공유지(the commons) 논의에서 공유부의 존재 방식과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공유지가 증세 잉글랜드의 재산권법에 처음 등장했을 때 공유지라는 말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된 자산”을 가리켰다(Caffentzis, 2016: 96). 사실 재산권은 ‘권리의 다발’이기에 분해할 수 있으며, 또 재산권이란 사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물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재산권은 자명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고 운영하는 체제를 필요로 한다(Commons, 1957; Macpherson, 1978). 이런 사고방식을 따라 공유부를 이해해보면 재산권법에 따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에게 몫이 있는 자연적, 사회적 생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적 생산이 사회적 생산으로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축적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보유하는 부를 사유재산으로 변형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네그리와 하트는 “부에 대한 평등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Hardt and Negri, 2009[2014]; 2017[2020]). 이들에게는 부에 대한 평등한 접근법 가운데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피터 반스는 토머스 페인과 같은 논거로 공유부와 배당을 제안한다. 그가 보기에 공유부는 자연이나 사회 전체가 만든 자산으로 공기와 생태계, 과학과 기술, 법과 금융 체계, 그리고 경제 체계 등을 포함한다. 현재는 이를 사적인 자본주의 기업이 이용함으로써 초과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 그는 이를 모두에게 배당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다수 중산층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Barnes, 2014[2016]).

사적 소유의 발생 조건인 원천적 공유라는 주장들에 기초하여 재정리해서 나온 것이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이다. 공유부(common wealth)는 말뜻 그대로 해당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한 부를 말한다. 이는 다시 자연적 공유부와 인공적 공유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공유부는 인류 모두의 것인 자연적 기초에서 나온 생산물이며, 인공적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측정할 수 없고 따라서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할 수 없는 생산물이다. 이는 다른 말로 역사적, 사회적 효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공유부가 이런 것이라 한다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정의로운 방식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금민, 2020a).

그런데 공적 소유(public property)와 사적 소유(private property) 이외에 다른 소유 형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부는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에 묻어 들어가 있다. 또한 자연적, 사회적 생산물로서의 공유부가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측정불가능하다. 로크가 사적 소유의 성립을 정당화할 때 90퍼센트가 노동을 투입한 개인의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말한 데 반해 허버트 사이먼은 생산물의 90퍼센트가 역사적, 사회적 지식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둘 다 계산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자연적, 인공적 부를 얼마로 볼 것인지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제는 자연적, 인공적 공유부는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공적 소유로 해서 공적인 영역에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물론 제3의 선택지로 둘을 혼합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와 관련해서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나누어주라(suum cuique tribuere)’는 오래된 분배 정의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선택지인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공유부의 일부를 공적 소유로 해서 공적 일에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에 대한 또 다른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된다.

공유부를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면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분배 방식이다. 자연적 공유부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며, 사회적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 이외에 방식을 상상할 수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결합된 원칙이다.

2) 기본소득의 목적: 공화주의적 자유

우리는 앞에서 공화주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다. 여기서는 그 맥락과 의미를 좀 더 상술할 필요가 있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말하며, 어떤 선택을 할 때 간섭이 없다면 어떤 개인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자유주의적 자유를 옹호한 대표적인 정치철학자인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대립시키면서 (국가의) 간섭이 최소인 상태의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었다(Berlin, 2002[2014]).

1960년대 이후 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및 대서양 혁명 이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 속에서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인 공화주의적 자유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Bailyn, 1967[1999]; Skinner, 1998[2007]). 공화주의적 자유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필립 페티에 따르면 우리는 부당한 개입(intervention)의 대상이 아닐 때만이 아니라 간섭(interference)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회적, 제도적 공간에 살 때에만 비로소 자유롭다. 그는 이를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 freedom)이라고 부른다(Pettit, 1997[2012]: 151-161).

페티에 비지배 자유를 위한 제도에 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만, 물질적 조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공화주의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토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

은 기본소득 옹호자들이다. 스페인의 라벤토스(Raventós)는 우선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신념 두 가지를 확인한다. 하나는 자유롭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집단의 임의적인 간섭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화주의적 자유는 다수에게로 확장될 수도, 아니면 소수로 좁혀질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재산과 그로부터 얻어진 물질적 독립이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재산이 부여하는 자립, 물질적 생존, 자치적 기반은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날 이는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보장될 수 있다 (Raventós, 2007[2016]: 99-100).

공화주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이 가장 적절한 이유는 무조건성이라는 원칙에 있다. 자유라는 것이 사실은 조건, 즉 물질적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면 이를 모든 사람이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자유가 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달려 있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장되어야 한다.

이때 사전에 보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비드 카사사스(David Casassas)는 이를 해방적 접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해방적 접근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라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둔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침해당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화주의적 자유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의 사전 분배로서의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Casassas, 2018[2020]: 149-152).

2.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 공유부 배당과 기본소득의 목적과 효과로서 공화주의적 자유를 근거로 논증하면,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은 위계적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이자 원천으로서 공유부 배당 원칙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다른 요건보다 더 중요한 요건으로 구성한다. 그러므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보다 중요한 요건으로 위계화된다. 여기에 기본소득의 목적이자 효과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추가하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조건성이다. 이러한 논증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 6가지는 무조건성 > 보편성과 개별성 > 정기성과 현금성 > 충분성으로 위계화된다. 기본소득 요건이 4층으로 위계화된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제도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의 무조건성이 1단계, 보편성과 개별성이 2단계, 정기성과 현금성이 3단계, 충분성이 4단계로 설정된다.

이러한 구성 요건의 위계는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기본소득 내에서도 완전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분류하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수정태들이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 그리고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지 위계화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1단계인 무조건성 원칙의 충족 여부는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1단계를 충족한 제도들은 2단계의 보편성과 개별성, 3단계의 정기성과 현금성, 4단계의 충분성을 차례대로 검증하면, 더 많은 단계를 통과한 기본소득이 더 낮은 단계를 통과한 기본소득 변형태보다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목적에 더 부합하는 기본소득으로 위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요건의 위계를 단계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기본소득	기본소득 아님
1단계	무조건성		
2단계	보편성, 개별성		
3단계	정기성, 현금성		
4단계	충분성		

[그림 2]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적 분석틀

3.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에 의한 제도적 변형태의 위계

1) 제도적 변형태

기본소득 논의에서 언급되는 기본소득의 변형태들과 유사 제도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포함하거나 일부 논자들에 의해 과도적 형태 혹은 기본소득의 변형으로 제시되는 변형태들은 기본소득의 완전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참여소득이다.

완전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이라는 용어는 Fitzpatrick(1999)이 가장 먼저 사용

한 용어이다.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기본소득이 온전한 형태로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실에서의 변형태를 고민할 때 이상적 형태로서의 기본소득을 변형태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피츠패트릭은 완전 기본소득을 무조건적이고, 그 자체로 먹고살기에 충분하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개념으로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최소소득보장(a guaranteed minimum income) 제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Fitzpatrick, 1999: 36).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은 무조건적이지만, 먹고살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닌 기본소득으로서(Fitzpatrick, 1999: 36) 기본소득의 5가지 구성 요건은 충족시키지만, 충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본소득을 일컫는다.

범주형 기본소득(categorical basic income)은 보편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몇 가지 범주의 인구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의미한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2018]: 360).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제기된 개념으로서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의미한다(De Wispelaere and Morales, 2021). 이는 기본소득의 정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수행이라는 조건을 근거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관대성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Fitzpatrick, 1999: 37).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증명하는 조건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무조건성을 제1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명백히 다르다(Fitzpatrick, 1999: 37).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에게 빈곤선 수준의 소득을 보충해주는 급여이다. 자산조사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 중 무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제도적 변형태의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적 단계 분석틀 적용

제도적 변형태로서 완전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가 기본소득의 6가지 구성 요건의 위계적 단계의 각 요소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분류	제도적 변형태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기본소득	완전 기본소득	●	●	●	●	●	●
	부분 기본소득	●	●	●	●	●	×
	재난 기본소득	●	●	●	×	●	×
	범주형 기본소득	●	×	●	●	●	(?)
기본소득 아님	참여소득	×	●	●	●	●	(?)
	부의 소득세	×	●	×	●	●	(?)

[그림 3] 제도적 변형태들의 기본소득 구성 요건 충족 여부

제도적 변형태들이 지닌 속성들을 기준으로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적 분석들에 적용하면, 참여소득과 부의 소득세는 제1단계인 무조건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한다. 제2단계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모두 충족했는가 여부로 판별한다. 제2단계에서는 보편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 탈락한다. 제3단계인 정기성과 현금성 충족 여부에서는 정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난 기본소득이 탈락하게 되고, 제4단계인 충분성 충족 여부 판별에서는 충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 기본소득이 탈락하게 된다.

제도적 변형태를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적 분석들에 적용하여 각 단계를 통과하는 제도와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제도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단계 통과	단계 탈락
1단계	무조건성		완전 BI 부분 BI 재난 BI 범주형 BI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2단계	보편성, 개별성		완전 BI 부분 BI 재난 BI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범주형 BI
3단계	정기성, 현금성		완전 BI 부분 BI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범주형 BI 재난 BI
4단계	충분성		완전 BI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범주형 BI 재난 BI 부분 BI

[그림 4] 제도적 변형태들의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적 분석들 적용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적 분석들을 기본소득의 변형태로서의 제도들에 적용하게

되면 각 제도가 통과한 단계에 따라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이 구분되고, 기본소득의 변형태로서의 범주형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이 위계화된다.

최종 단계인 4단계까지 모두 통과한 기본소득을 완전 기본소득이라 할 때, 3단계를 통과한 부분 기본소득, 2단계를 통과한 재난 기본소득, 1단계를 통과한 범주형 기본소득이 차례로 위계화된다. 이는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 6가지가 모두 유의미성을 지닌 속성이지만, 그 속성들이 모두 동일한 무게로 기본소득을 구성하고 있거나 모두 같은 층위에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기본소득의 목적이라는 가치로 그 속성들이 위계화될 수 있고, 각 속성을 한 가지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본소득의 제도적 변형태가 충족시키지 못한 속성의 위계를 기반으로 제도적 위계가 설정된다.

이러한 분석틀 적용의 결과로 기본소득의 위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기본소득				기본소득 아님
1단계	무조건성					
2단계	보편성, 개별성					
3단계	정기성, 현금성					
4단계	충분성					
최종 통과 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1단계 탈락
제도 분류		완전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그림 5] 기본소득의 위계

기본소득의 위계는 구성 요건의 모든 단계를 통과한 완전 기본소득을 최종 단계에 위치시키고, 다양한 변형의 기본소득의 상대적 위치를 알려준다. 보다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과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가늠하게 한다. 기본소득의 다양한 변형이 모두 동일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이라면 범주형 기본소득이든, 재난 기본소득이든, 부분 기본소득이든 취사선택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다양한 변형들은 동일한 위계에 있지 않다. 부분 기본소득이 재난 기본소득을 포함한 다른 기본소득보다 완전 기본소득에 더 가까운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이고, 재난 기본소득이 범주형 기본소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이라는 위치를 점한다.

IV. 결론

아이디어로서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규범적 정당성 및 재원 일반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게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라면, 기본소득 지급에 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혹은 마련할 수 있는가가 재원 문제였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현실의 정책 수준으로 넘어오면서, 제안되고 있는 구체적인 기본소득안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제안된 기본소득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이며, 다른 하나는 제안된 기본소득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데 적절한 단계 혹은 경로인가라는 것이다.

우선 이 글은 기본소득의 정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건과 충분성이라는 또 다른 주요 요건을 분석하여 기본소득의 판별 지표로 삼으려 했다. 우선 보편성은 현실에서 특정 정치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특정 정치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시민권으로 한정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의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정치공동체가 결정할 문제이다. 또한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하나의 속성으로 설명한 기존의 사회정책에서의 보편성 논의를 승계, 발전시켜, 조건이 부과되는 속성은 무조건성으로 재분류하고, 가장 보편적이라고 설명된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보편성을 한 단계 더 확장하여 보편성을 귀속적 속성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둘째, 무조건성은 자산조사와 근로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부조나 근로조건부 급여와 기본소득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권리임이 나타내는 지표이며, 공화주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공동체의 목표를 가리키는 지표이기도 하다. 셋째, 개별성은 정치공동체 내에서 모두가 동등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현대의 대부분의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함에도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조직 내에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특히 권력 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등자가 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다. 넷째, 정기적 간격과 지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정기성은 삶의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이다. 다섯째, 현금성은 말 그대로 시장-화폐 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선택

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때 선택의 자유는 사회서비스 같은 현물급여의 필요성, 정당성, 효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는 현금급여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충분성은 기본소득의 정의에 기반한 요건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이 어떤 수준에서건 경제적 보장의 일부라고 할 때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가 혹은 어떤 것이 기본소득이 아닌가를 판별하는 데는 이 여섯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이 여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만 온전한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제도로써 기본소득을 구현하려고 할 때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기성 질서, 특히 기존의 분배와 재분배 체제를 바꾸는 일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도입 시에 기본소득의 여섯 가지 구성 요건 중 일부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킨 모델이 등장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기본소득의 변형을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때 어떤 기본소득 모델이 더 나은지 혹은 더 적절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의 지표들 사이의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위계 설정을 통해 현실의 기본소득 도입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게 가능하며, 또 그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기본소득 구성 요건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 글에서 제시한 근거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그리고 기본소득의 목적으로서의 공화주의적 자유이다.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이라고 할 때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방식이며, 이런 점에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결합된 원칙이다. 여기에 기본소득의 목적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더하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조건성이 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는 보편성과 개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변형된 기본소득의 도입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출발점이라 할 때 충분성이 맨 마지막에 오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여섯 가지 지표를 각각 정의하고 그 의미를 풍부하게 도출하는 일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에서 각 지표가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또한 이런 시도를 통해 우선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판별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 덧붙여 각각의 지표가 지닌 지향과 효과를 드러냄

으로써 기본소득 논의 자체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지표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는 일은 변형된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큰 현실의 기본소득 제도가 온전한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할 때 적절한 것인지, 혹은 어떤 난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금민, 2020a,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서울: 동아시아.
- 금민, 2020b, “기본소득의 정의와 공통부 개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회쟁점토론회, https://basicincomekorea.org/discussion-topic-1_definition_paper-draft_by_min-geum/.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운, 2018,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사회평론.
- 노호창, 2020,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 『사회보장법학』, 9(1), 143-193.
- 서정희, 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 구축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7, 7-45.
- 서정희, 2021, “기본소득론 관점에서 본 기초자산”, 『한국사회정책학』, 28(2), 13-51.
- 서정희, 노호창, 2020, “기본소득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법학』, 9(2), 31-86.
- 안효상, 2017, “서양의 기본소득 논의 궤적과 국내 전망”, 『역사비평』, 120, 220-249.
- Alston, P., 2017, “Universal Basic Income as a Social Rights-based Antidote to Growing Economic Insecurity”, *Public Law & Legal Theory Research Paper Series Working Paper*, No. 17-51,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Anderson, P., 2009(2018), 『대전환의 세기, 유럽의 길을 묻다』, 안효상 역, 서울: 도서출판 길.
- Arendt, H., 1951(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2』, 박미애, 이진우 공역, 파주: 한길사.
- Bailyn, B., 1967(1999), 『미국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배영수 역, 서울: 새물결.
- Barnes, P., 2014(2016),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위대선 역, 서울: 갈마바람.
- Berlin, I., 2002(2014), 『이사야 별린의 자유론』, 박동천 역, 서울: 아카넷.
- Bidadanure, J. U., 2019, “The Political Theory of Universal Basic Incom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481-501.
- Bollier, D. and Helfrich, S., 2019, *Free, Fair, and Alive: The Insurgent Power of the Commons*, Gabriola, BC: New Society Publishers.
- Bonciu, F., 2020, “Universal Basic Income and Universal Basic Assets as Possible Solutions to the Current Disequilibria and Threats Manifested in the Labor Markets”, *Romanian Economic and Business Review*, 14(4), 7-16.
- Caffentzis, G., 2016, “Commons”, In K. Fritsch, C. O'Connor, and AK Thompson(Eds.), 『Keywords for Radicals: The Contested Vocabulary of Late-Capitalist Struggle』, Chico, CA: AK Press, 95-101.
- Calnitsky, D., 2016, “More Normal than Welfare: The Mincome Experiment, Stigma, and Community Experienc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Revue canadienne de sociologie*, 53(1), 26-71.

- Casassas, D., 2018(2020), 『무조건 기본소득: 모두의 자유를 위한 공동의 재산』, 구유 역, 서울: 리얼부커스.
- Cole, G. D. H., 1935, *Principles of Economic Planning*, London: Macmillan and Co.
- Commons, J. R., 1957, *Legal Foundation of Capitalism*,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Dalla Costa, M., 1983(2017), 『집안의 노동자: 뉴딜이 기획한 가족과 여성』, 김현지, 이영주 공역, 서울: 갈무리.
- De Wispelaere, J., 2015, *An Income of One's Own? The Political Analysis of Universal Basic Income*, Tampere University Press.
- De Wispelaere, J. and Morales, L., 2021, "Emergency Basic Income during the Pandemic",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30(2), 248-254.
- De Wispelaere, J. and Stirton, L., 2004, "The Many Faces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75(3), 266-274.
- Ferguson, J., 2015(2017),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조문영 역, 서울: 여문책.
-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 Gilbert, N. and Terrell, P., 2013(2020), 『사회복지정책론: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남찬섭, 조성은, 김기태, 민기채, 김수정 공역, 고양: 지식공동체.
- Hardt, M. and Negri, A., 2009(2014), 『공통체』, 정남영, 운영광 공역, 고양: 사월의책.
- Hardt, M. and Negri, A., 2017(2020), 『어셈블리』, 이승준, 정유진 공역, 고양: 알렙.
- Harrington, J., 1656(1992), 『The Commonwealth of Oceana』, J. G. A. Pocock(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rdan, B., 1988, "What Are Basic Incomes", *Basic Income Research Group Bulletin*, no. 7(Spring 1988), 3-4.
- Korpi, W. and Palme, J.,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Oct., 1998), 661-687.
- Macpherson, C. B., 1978, *Property: Mainstream and Critical Positions*, Toronto and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arx, K., 1867(2008), 『자본 1』, 강신준 역, 서울: 도서출판 길.
- Meade, J., 1948, *Planning and the Price Mechanism: The Liberal-Socialist Solution*, London: Allen and Unwin.

- Meade, J., 1972, *Controlled Economy*, London: Allen and Unwin.
- Murray, C., 2016, *In Our Hands: A Plan to Replace the Welfare State*,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Murray, M. C. and Pateman, C., 2012, "Introduction", In M. C. Murray and C. Pateman(Eds.), 『Basic Income Worldwide: Horizons of Reform』, Palgrave: Macmillan, 1-8.
- Paine, T., 1796(2017), "토지 정의", 안효상 역, 『시대』, 50, 63-72.
- Pettit, P., 1997(2012), 『신공화주의: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박준혁 역, 파주: 나남.
- Raventós, D., 2007(2016),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재명, 이한주 공역, 서울: 책담.
- Robinson, J., 1969,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Employment(2nd edition)*, London: Macmillan.
- Russell, B., 1935(2012), 『케임즈에 대한 찬양』, 송은경 역, 서울: 사회평론.
- Simon, H., (2000), "A Basic Income for All." Boston Review, 1 October. <https://bostonreview.net/forum/basic-income-all/herbert-simon-ubi-and-flat-tax>
- Skinner, Q., 1998(2007), 『퀸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조승래 역, 서울: 푸른역사.
- Standing, G., 2011(2014),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역, 고양: 박종철 출판사.
- Standing, G., 2017(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역, 파주: 창비.
- Standing, G., 2019(2021), 『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안효상 역, 파주: 창비.
- Torry, M., 2018(2020a), 『왜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이영래 역, 안효상 감수, 서울: 생각이음.
- Torry, M., 2018(2020b),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로트슈타인에 대한 응답", P. Van Parijs(Ed.), 『기본소득과 좌파』, 안효상 역, 고양: 박종철출판사.
- Torry, M., 2019,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In M. Torry(Ed.),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15-29.
- Van Gunsteren, H. R., 1998(2020), 『시민권의 이론』, 장진범 역, 서울: 그린비.
- Van Parijs, P., 1995(2016),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조현진 역, 서울: 후마니타스.
- Van Parijs, P., 2006(2010),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B. Ackerman, A. Alstott, and P. Van Parijs(Eds.), 『분배의 재구성』, 너른복지연구회 역, 서울: 나눔의집.
- Van Parijs, P. and Vanderborght, Y., 2017(2018), 『21세기 기본소득』, 홍기빈 역, 오월의 봄.

Widerquist, K. and Sheahan, A., 2012, “The United States: The Basic Income Guarantee: Past Experience, Current Proposals”, In M. C. Murray and C. Pateman(Eds), 『Basic Income Worldwide: Horizons of Reform』,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11-32.

Wright, E. O., 2019, *How to Be an Anticapitalist in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Verso.

인터넷자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11월 15일 검색,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1차 쟁점 토론회: 기본 소득의 정의”, https://basicincomekorea.org/discussion-topic-1_definition-of-basic-income_paper-revised_by_min-geum/.

Basic Income Ireland, 2021년 11월 15일 검색, “What is Basic Income?”, <https://basicincome.ie/>.

Unconditional Basic Income Europe, 2021년 11월 15일 검색, “who-we-are”, <https://www.ubie.org/who-we-are/>.

Abstract

Building the Hierarchy of Its Constituent Features and Discerning the Schemes

: Some Implications of the Consideration of Basic Income Definition toward
the Strategy for Its Realization

Jeonghee Seo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unsan National University

Hyosang Ahn

Vice-president, Institute for Political and Economic Alternatives

The issues around Basic Income have changed as it became more feasible and the policies containing the name of basic income implemented. The fundamental issue of what is basic income and the policy issue of which basic income will be an appropriate path to a full basic income is raised.

This paper holds that we are able to discern what is and is not basic income based on the hierarchy of its constituent features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hierarchy among various basic income schemes because we can form the hierarchy of its features.

Firstly,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around the constituent features respectively presenting six characteristics that are made of basic income as essential ones. Secondly, it builds a hierarchy of the constituent features of basic income based on the common wealth as its legitimation and source and the republican freedom as its aim and effect. Finally, it derives the hierarchy of certain scheme of the variants of basic income based on the hierarchy of the constituent features of basic income.

Keywords: basic income, constituent features of basic income, hierarchy of basic income, full basic income, partial basic income, emergency basic income, categorical basic income, participation income

E-mail:

서정희 sjh@kunsan.ac.kr

안효상 ahs63@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21년 09월 28일

논문심사일 : 2021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2일